

# 감 사 원

## 통 보

### 제 목 규제개혁장관회의의 과제 이행관리 부적정

소 관 청 국무조정실

관 계 기 관 국무조정실

내 용

국무조정실 및 환경부 등 중앙행정기관은 2014. 3. 20. 제1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의를 통해 수립된 정책과제(52개) 이행을 추진하고 그에 따른 사후관리 하고 있다.

국무조정실에서 마련한 '규제개혁장관회의의 건의과제 처리 프로세스'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에서 건의사항을 접수하여 과제 추진 등을 담당할 각 부처에 통보하고, 각 부처는 건의과제의 수행가능성을 확인하여 추진계획을 수립하며, 국무조정실은 각 부처에서 수립한 추진계획을 검토한 후 승인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각 부처에서 과제 이행 후 규제정보포털을 통해 완료승인을 요청하면, 국무조정실은 이행과제가 선정 취지 및 이행계획에 맞게 추진되었는지 등 추진 성과를 증빙자료를 통해 확인하여 완료승인을 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각 과제 담당 부처는 과제가 완료된 이후에도 현장의 추가 에로사항이 있는지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규제개혁장관회의의 과제가 완료되었다라든가 각 과제 담당 부처는 조치

내용이 일신 현장까지 전달되어 원활히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한 사후관리를 실시하여 미비점이 발견된 경우 보완 방안을 마련하는 등 규제개선을 위해 선정된 과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이번 감사원 감사기간(2014. 11. 17.~12. 19.) 중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의 과제의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완료승인된 '푸드트럭 허용' 과제 및 '중소기업의 화학물질 관리지원 강화' 과제는 다음과 같은 미비점이 발견되었다.

### 가. '푸드트럭 허용' 과제 이행관리 부적정

국무조정실 등<sup>1)</sup>에서는 소자본 창업 등 일자리 창출, 새로운 먹거리 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유원시설' 내 푸드트럭<sup>2)</sup>을 이용한 영업을 가능하도록 하는 규제개선과제를 추진하였다.

국무조정실 등은 2014. 10. 13.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및 같은 해 10. 2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을 개정하여 푸드트럭 영업가능지역을 유원시설에서 체육시설, 관광지, 도시공원, 하천부지로 확대하였으며, 국무조정실은 같은 해 11. 12. 각 시·도 등에 영업절차, 위생·안전 관리 등이 포함된 메뉴얼(이하 "푸드트럭 업무 메뉴얼"이라 한다)을 배포한 후 위 과제를 완료로 처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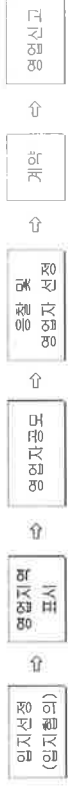
한편 '푸드트럭 업무 메뉴얼'에 따르면 영업자 선정절차는 [그림 5]와 같이 시

1) 국무조정실에서는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의 과제 중 다수의 소관 부처가 관계된 5개 과제(① 의무인근로자 고용변동 신고 일원화, ② 고용노동부와 규제청에 대한 이중신고 불문 개선, ③ 푸드트럭 허용, ④ 게임산업 관련 중부 규제 개선, ⑤ 게임관련 규제신설 논의 중지)의 경우 소관부처의 더불어 규제개혁장관회의 총괄기관으로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으며, 푸드트럭 과제는 국무조정실, 식품의약품안전처,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과제를 추진 중이며, 국무조정실이 해당 과제를 총괄하고 있음

2) 자동차를 이용하여 음식 및 제과류 등을 판매하는 시설

설관리주체의 입지 검토(시설관리주체의 입지선정 및 영업지역 표시) 후 공모를 통해 선정된 영업자가 계약을 체결하고 영업신고로 영업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 푸드트럭을 이용한 영업을 위해서는 시설관리주체의 입지 검토를 통한 영업자 공모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림 5] 푸드트럭 영업신고 절차



자료: 감사대상기관 자료 재구성

그러나 이번 감사원 감사기간(2014. 11. 17.~12. 19.) 중 전국 16개 시·도의 푸드트럭 관련 입지 검토 현황을 확인한 결과, 고양시<sup>3)</sup>를 제외하고는 입지 검토를 한 지방자치단체가 없었고, 특히 울산광역시 등 일부(2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하천·공원부지 내에서 푸드트럭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입지 검토를 해달라는 민원요청<sup>4)</sup>이 있었는데 이를 검토하지 않는 등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경기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관하 52개 시·군<sup>5)</sup>을 대상으로 입지 검토를 하지 않고 있는 사유를 조사한 결과, [별표 1] “경기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관하 시·군의 푸드트럭 입지 검토 관련 명세”와 같이 52개 시·군 중 30개 (80%) 지역<sup>6)</sup>에서 ‘푸드트럭 업무 매뉴얼’이 영업신고를 담당하는 시·군 식품위생과로만 전달되고 ‘푸드트럭 업무 매뉴얼’이 배포된 지 한 달이 경과한 2014. 12. 12. 까지도 입지검토를 하여야 할 시설관리부서까지 전달되지 않고 있었다.

그리고 ‘푸드트럭 업무 매뉴얼’이 시설관리부서에 전달된<sup>7)</sup> 22개 시·군의 경우

3) 2014. 11. 5. 입지검토를 위한 용역을 발주하여 검토 중

4) 2014. 7. 29. 규제개혁신문을 통해 울산광역시 태화강 강변주차장(하천)에서 푸드트럭으로 커피를 판매하고자 하나 울산광역시에서 하천내 영업행위는 불법이므로 푸드트럭 영업허가를 해줄 수 없다는 내용으로 회신하고 있어 푸드트럭 규제가 풀린 상황에서 하천부지에 푸드트럭 영업이 불가능하지 공금하며, 영업을 가능하도록 해 달라는 내용의 민원이 접수되었으며 2014년 12월 현재까지 이와 유사한 총 4건의 민원이 규제신문에 접수

5) 서천군, 홍성군, 예산시, 당진시 등 5개 기관의 경우 입지검토를 하지 아니한 사유 및 접수일자를 제출하지 않아 분석에서 제외

6) 동일한 시·군에서 시설관리부서가 다수인 경우 2개 이상의 시설관리부서에 전달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로 한정

7) 푸드트럭 업무 매뉴얼이 일부 부서에만 전달된 경우도 포함

에도 기존 상권 존재 등으로 푸드트럭의 영업 수익성이 낮을 것이라는 막연한 추측 및 ‘푸드트럭 업무 매뉴얼’ 접수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푸드트럭 업무 매뉴얼’을 접수만 한 채 해당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등의 사유로 입지 검토에 착수하지 않고 있어<sup>8)</sup> 2014년 12월 현재 유원시설 등에 대한 푸드트럭 영입신고 건수는 한 건도 없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규제개선 효과가 저조한데도 국무조정실에서는 이를 완료과제로서 처리한 채 입지 검토 부진 원인 파악 및 이를 해소하기 위한 후속조치 등 과제 이행의 실효성을 제고할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 나. ‘중소기업의 화학물질 관리지원 강화’과제 이행관리 부적격

2014. 3. 20.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sup>9)</sup> 및 「화학물질관리법」<sup>10)</sup> 시행(2015. 1. 1.)에 따른 산업재해예방 시설 설치 및 노후 제조시설 개선 의무화 등으로 대응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sup>11)</sup>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건의가 있자, 환경부 등 관계기관<sup>12)</sup>에서 같은 해 3.

8) 입지검토를 하고 있지 않은 57개 시·군 중 화성시·수원시는 이번 감사기간 중 입지검토 계획서를 작성하였고 12개 시·군은 앞으로 입지검토에 착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

9) 화학물질과 화학물질이 함유된 제품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자국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화학 물질의 등록·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일정한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제조·수입 전에 환경부장관에 등록하며, 환경부장관은 위해성을 평가하여 유독물·허가물질·제한물질·금지물질 등으로 지정하여 화학물질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국민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2013. 5. 22. 제정되고 2015. 1. 1. 시행

10) 최근 잇따라 발생한 화학사고로 인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으로는 화학물질 관리 및 화학사고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국민의 불안감이 가중되자 화학물질에 대한 통제조사 및 정보체계를 구축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유해화학물질 예방관리체계 구축을, 화학사고 장기영향평가제도 및 영업허가제 신설 등을 통해 예방관리체계 강화, 화학사고 발생시 즉시 신고의무 부여, 현장조정관 파견 및 특별관리지역 지정 등을 통해 화학사고의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하고자 2013. 6. 4.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폐지하고 「화학물질관리법」으로 통합하여 2015. 1. 1. 시행

11) 화학 관련 업체는 16,547개소로 이 중 중소기업이 15,905개소(96%)

27. [표 4]와 같이 기존 각 부처의 노후시설 개·보수 용자·보조 사업과 연계하여 화학물질시설 투자비용 지원 및 중소기업체 방문교육·컨설팅 등의 화학물질 시설 투자지원 방안을 마련하였다.

[표 4] 화학물질시설 투자비용 지원 등에 대한 후속조치 계획

구분	후속조치 계획
추진방안	관계부처유관기관 협동으로 ‘산업계 지원단’을 구성(2014년 4월)하여 중소기업 유형별 맞춤형 지원을 실시(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청)
투자비 지원	각 부처의 노후시설 개보수 용자보조사업과 연계하여 화학물질시설 투자비용을 지원(산업재해예방 시설 용자, 물리산업장 보전(2014년 1,915억 원), 환경기어짐금 용자(2014년 120억 원) 등)
컨설팅 등 내용	중소업체 방문교육·컨설팅 2014년 800개사, 집중기술지도 2014년 10,000개소 등 추진

자료: 환경부 등의 화학물질 지원계획 자료 재구성

그리고 환경부 등에서는 2014. 9. 3. 위 과제의 경우 [표 5]와 같이 이행을 완료된 것으로 언론에 공개하였다.

[표 5] 화학물질시설 투자비용 지원 관련 조치내용

구분	조치내용
추진방안	관계부처유관기관 협동·화한연선 산업계 지원단을 구성하여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는 한편 중소기업 화학안전 관리역량 제고방안 발표(2014. 6. 25. 경제관계장관회의)
투자비 지원	산업재해예방시설 용자사업(2014년 1,001억 원), 물리산업장 보조사업(2014년 914억 원), 환경기어짐 용자사업(2014년 120억 원)
컨설팅 등 내용	2014년 800개소의 중소기업에 방문교육하거나 컨설팅을 실시하는 한편 고노도 물질을 화학하여 판매하는 20인 미만 업체 133개 대상으로 방문교육 실시

자료: 환경부 등의 화학물질시설 투자비용 계획 자료 재구성

그런데 이번 감사원 감사기간(2014. 11. 17.~12. 19.) 중 위 과제의 실제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환경개선자금 용자사업’<sup>13)</sup>의 경우 대출 시 담보를 받든

12)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청

13) ‘환경개선자금 용자사업’(2014년 예산 120억 원)은 기존의 환경개선자금 중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 분야를 특화하여 유독물 이용배관, 저장탱크, 탱크로리, 개인보호장구, 방류부 용량충실 경보기, 스프링클러를 비롯한 안전장치 등 화학물질 취급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주에게 2014년 2분기 금리 인 287%, 3년 거치 4년 상환, 지원한도 10억 원으로 하여 용자금을 지원하는 사업

시 제공하도록 되어 있는 등 대출 조건이 까다로워 2014년 12월 현재 5개 사업장에 14억여 원의 예산이 집행되어 예산 집행률이 전체 예산(120억 원) 대비 11%에 불과하였고, ‘산업재해예방시설 용자사업’<sup>14)</sup>은 위와 동일한 사유로 2014년 12월 현재 화학물질시설 투자비용 관련 용자실적이 없었으며,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sup>15)</sup>은 사업에 대한 홍보 부족 등으로 30개 업체에 화재·폭발 예방설비로 불과 1.6억 원(예산 대비 0.2%)만이 지원된 상태였다.

또한, 고농도 화학물질을 희석·판대하는 20인 미만 업체 133개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및 사고발생 시 조치사항 등을 직접 사업장에 방문하여 교육하는 중 소업체 방문교육의 경우 과제 선정 이후 7개월이 지난 2014년 11월까지도 교육 수행 강사 선정 및 교육자료 마련 등 사전준비가 이루어지지 않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및 「화학물질관리법」의 시행(2015. 1. 1.)이 임박한 2014년 12월 현재까지 교육을 실시한 기업이 없는 실정이었다.

그런데도 환경부에서는 위 과제의 개선방안 중 실적이 저조한 사업의 원인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앞으로도 위 사업을 그대로 진행할 예정이다.

“가칭”과 “나랑”의 내용과 같이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선정된 일부 이행과제의 개선 성과가 실제 현장에서는 미흡하게 나타나는데도 국무조정실 및 환경부에서는 이에 대한 후속조치를 마련하지 않고 있어 규제 개선 효과의 실효성이

14) ‘산업재해예방시설 용자사업’은 화학물질시설 이외에 안전보건시설(프레스, 풍작기계, 사출성형기, 크레인, 지게차 등을 이용하는 업체)을 설치·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주에게도 연 3%, 3년 기차 7년 상환, 지원한도 5억 원을 기준(위 기준은 화학물질시설도 동일 적용)으로 지원

15)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2014년 예산 94억 원)은 기술·재정적 능력이 취약한 50인 미만 사업장 및 공사금액 10억 원 미만 건설현장에 안전보건관리 시스템 구축 등 설비투자 시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여 현 총 2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

저하될 우려가 있다.

[별표 1]

**경기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관하 시군의 푸드트럭 입지 검토 관련 명세**

□ 업무매뉴얼이 시설담당부서에 전달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 명세

연번	광역시/광역시(단체)(도)	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	업무매뉴얼이 시/도(자치)에 전달되지 않은 시설담당부서	
			시설유형	담당부서
1		이천시	체육시설 하천	-
2		평택시	체육시설 하천	-
3		화성시	유원시설 하천	-
4		부천시	관광단지 하천	-
5		수원시	체육시설 하천	-
6		구리시	체육시설 하천	-
7		연천군	공공하수 처리시설 하천시설	-
8	경기도(17개)	군포시	체육시설 하천	-
9		파주시	체육시설 하천	-
10		남양주시	체육시설 하천	-
11		광주시	체육시설 하천	-
12		하남시	체육시설 하천	-
13		포천시	관광단지 하천	-
14		고양시	체육시설 하천	-
15		안산시	하천 체육시설	-
16		인양시	체육시설 하천	-

연번	광역지방자치단체(도)	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	업무매뉴얼이 수립되지 않은 시설담당부서	
			시설유형	담당부서
17		안성시	체육시설 하천	-
18	충청북도(4개)	단양군	체육시설 하천	-
19		보은군	체육시설 하천	-
20	충청남도(4개)	영동군	체육시설 하천	-
21		음성군	체육시설 하천	-
22		천안시	체육시설 하천	-
23		공주시	체육시설 하천	-
24		보령시	체육시설 하천	-
25		아산시	체육시설 하천	-
26	충청남도(9개)	논산시	체육시설 하천	-
27		계룡시	체육시설 하천	-
28		금산군	체육시설 하천	-
29		청양군	관광단지 하천	-
30		태안군	체육시설 하천	-

주: 시설관리주체 중 2곳 이상에 업무매뉴얼이 전달되지 않은 시·군만 기재  
자료: 경기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충청북도 제출자료 재구성

입지검토를 하지 않은 사유별 지방자치단체 명세

연번	광역지방자치단체(도)	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	시설유형별 담당부서		업무매뉴얼 접수일자	푸드트럭 영업지역 입지검토를 하지 않은 사유
			시설유형	담당부서		
1		성남시	도시공원	-	2014. 12. 4.	
2		용인시	도시공원 유원시설 하천	-	2014. 11. 17. 2014. 11. 18. 2014. 11. 18.	
3	경기도 (7개)	의왕시	체육시설 도시공원 하천	-	2014. 12. 4. 2014. 12. 5. 2014. 12. 8.	주변 상권 고려 시 수익성 없음 및 기타 (차량 운행 불가, 주차장 없음 등)
4		동두천시	관광단지 체육시설	-	2014. 11. 25. 2014. 11. 25.	
5		기명군	도시공원 관광단지	-	2014. 12. 1. 2014. 11. 25.	
6	경기도 (7개)	양주시	도시공원 관광단지 하천	-	2014. 12. 16. 2014. 11. 25. 2014. 12. 4.	
7		김포시	도시공원 하천	-	2014. 12. 4. 2014. 12. 5.	주변 상권 고려 시 수익성 없음 및 기타 (차량 운행 불가, 주차장 없음 등)
8		육천군	체육시설 도시공원 하천	-	2014. 12. 8. 2014. 12. 3. 2014. 12. 5.	
9	충청북도 (2개)	제천시	관광단지 유원지 체육시설	-	2014. 11. 24. 2014. 12. 4.	
10		광명시	도시공원	-	2014. 12. 4.	
11	충청북도 (1개)	증평군	체육시설 도시공원 하천	-	2014. 11. 20. 2014. 12. 3. 2014. 12. 12.	업무 미숙지
12		괴천시	체육시설 도시공원 하천	-	2014. 12. 16. 2014. 9. 26. 2014. 12. 5.	업무매뉴얼 접수 사실 미인지
13		의정부시	도시공원 체육시설	-	2014. 12. 4. 2014. 12. 10.	
14	경기도 (2개)	양평군	관광단지 도시공원 하천	-	2014. 11. 19. 2014. 11. 19. 2014. 11. 19.	사업자 수요 없음 및 기타 (국토교통부에서 행정용허가서부 기준 개정 중)

연번	광역지방자치단체(도)	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	시설유형별 담당부서		업무규정 접수일자	푸드트럭 영업지역 입지검토를 하지 않은 사유
			시설유형	담당부서		
15	충청북도 (2개)	괴산군	관광단지	-	2014. 11. 20.	
			체육시설	-	2014. 11. 20.	
			도시공원	-	2014. 12. 3.	
16	진천군	체육시설	-	2014. 12. 10.		
		도시공원	-	2014. 12. 3.		
17	경기도 (3개)	시흥시	-	2014. 12. 4.	검토 중 및 기타(개인사유지임)	
		여주시	-	2014. 11. 25.		
19	경기도 (3개)	오산시	도시공원	-	2014. 12. 3.	
			체육시설	-	2014. 9. 26.	
			하천	-	2014. 12. 11.	
20	충청북도 (2개)	청주시	도시공원	-	2014. 12. 3.	검토 중 및 기타(개인사유지임)
			관광단지	-	2014. 12. 12.	
21	충청남도 (1개)	부여군	도시공원	-	2014. 12. 12.	
			하천	-	2014. 12. 12.	
22	충청남도 (1개)	부여군	관광단지	-	2014. 11. 19.	
			체육시설	-	2014. 11. 19.	
			도시공원	-	2014. 12. 3.	
					2014. 11. 21.	

자료: 경기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국무조정실장은 '푸드트럭 허용' 과정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푸드트럭 입지 검토 실패를 파악하는 한편 검토 부진 원인을 분석하여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